

의안번호	2217470
의 퇴 인	박성민의원
회 답 일	2026.7.21.
추계번호	26C14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2조제2항·제3항 (건강검진)	○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항) 1. 일반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u>다만, 제1호의2에 따른 노년기건강검진 대상인 사람은 제외한다.</u> <u>1의2. 노년기건강검진: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신설)</u> ○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제3항) <u>이 경우 노년기건강검진에는 낙상 위험, 인지기능 저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년기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후단신설)</u>	의무규정
2	안 제 52조제4항·제5항 (건강검진)	○ 공단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4항 신설) ○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연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2조제2항·제3항 (건강검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 52조제4항·제5항 (건강검진)	

2. 상세 사유

□ 노년기 건강검진(안 제52조제2항·제3항)

- 개정안에 따라 노년기건강검진을 신규 도입할 경우 신규 검진항목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연동하여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다만,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기금 지원분만이 대상이 됨¹⁾
 -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²⁾ 법정 지원 규모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임
 -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여 보험료 수입 규모도 증가하고, 그 결과 상기 법정 비율에 따른 국가의 지원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임³⁾⁴⁾
- 그러나,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건강보험 추가 지출액이 특정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신규로 도입할 노년기건강검진의 검진항목·대상·주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 현행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성·연령별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검진항목으로 노인신체기능 검사(66, 70, 80세), 인지기능장애 검사(66세 이후 2년 주기), 골밀도 검사(66세 여성), 폐기능 검사(66세)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어, 신규 도입될 항목의 범위 또한 현시점에 확정하기 어려움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3)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2023~2025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 노년기건강검진 결과 연계 시스템 구축(안 제52조제4항·제5항)

- 개정안에 따라 노년기건강검진결과에 연계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경우,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연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 데이터 연계 방식, 신규 시스템 구축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간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을 위한 전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검진 결과 연계를 위한 별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시스템 구축 비용의 부담 주체도 현시점에 특정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nabo.go.kr